

동두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14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“지방자치법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함.(안 제1조)

나.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함(안 제2조 제3호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2. (생략) 3. <u>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</u> 의 규정 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(생략)	제 2 조 (범 위) 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

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